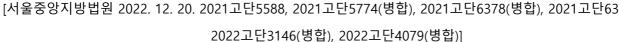
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특수상해(인정된죄명상해)·재물손

괴





[전문]

【피 고 인】 피고인 1 외 1인

【검 사】 윤신명(기소), 임현철(공판)

【변 호 인】 변호사 김수연 외 1인

【주문】

1

[피고인 1]

피고인을 판시 2021고단5588 중 1.의 가, 나죄, 2021고단577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, 판시 2021고단5588 중 1.의 다, 2.죄, 2021고단6378, 2021고단6379, 2022고단3146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.

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이수를 명한다.

압수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2년 압제1818호의 증 제2 내지 10호, 제14호를 각 몰수한다.

피고인으로부터 11,189,677원을 추징한다.

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.

[피고인 2]

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.

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이수를 명한다.

피고인으로부터 510만 원을 추징한다.

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.

[이유]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"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특수상..." (판례, 2021고단5588, 2021고단5774(병합), 2021고단6378(병합), 2021고단 6379(병합), 2022고단3146(병합), 2022고단4079(병합))

1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